



2021.12.24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 of the Bills Approved in 202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총괄 |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임준기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문지은

추계 | 태정림 정재호 이택균 김계남 윤주철
문지은 지수현 박나경 우병혁 유희수
이윤경 박선아 안종덕 장삼열 이미연
여은구 이우영 백수연 김효경 박지원
이겨레 김태민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지원 | 양승미 이은영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 02) 6788-3766 | e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의 심의(2021.12.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추계의 일부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비용추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가결 이후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발 간 사

가
· 가 2017 가 가
,
· 2018 가 가
· 가 가
「2020 가」 2020 가
2020·2021 2018
2020 가
· 가
2020 1,039 , 가
302
· 가 90 2020 2021 2.5 , 4.1
, 가 3.2%(2020), 8.2%(2021)
5 1 3,150 , 6 4,144
가
, 가
·

2021 12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차 례

I. 서 론 / 1

1. 1
2. 4

II.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 9

1. 9
2. 11
3. 12

III.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수입법률 / 15

1. 15
2. 2020 가 16
3. 18
4. 2020 가 33

IV.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지출법률 / 37

1. 37
2. 2020 가 38
3. 41
4. 2020 가 47
5. 가 : 2018~2020 51

V. 결 론 / 73

[부록] 2020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79

표 차례

[1]	2020 가		10
[2]	2020 가		11
[3]	2020 가	:	12
[4]	2020 가	:	13
[5]		:	16
[6]		:	18
[7]	2020		21
[8]	「 」		23
[9]	「 」		24
[10]	「 가가 」		25
[11]	「 」	:	26
[12]	「 」		26
[13]	「 」		28
[14]			29
[15]	「 」		30
[16]	「 」		31
[17]			32
[18]			33
[19]	2020 가 2021		34
[20]	2020 가 2021		35
[21]		:	38
[22]		:	42
[23]		:	43
[24]		:	44
[25]			44
[26]	2020 가		46
[27]	2020 가	: 2020~2021	47
[28]	2020 가	: 2020~2021 	49
[29]	2020 가		50

[30]	2020·2021			51
[31]		:		53
[32]		:		54
[33]		:		55
[34]		:		56
[35]		:		57
[36]		:		58
[37]	2020 가	:		59
[38]	2020 가	:		60
[39]	2020 가	:		61
[40]	2020 가	:		62
[41]	2020 가	:		63
[42]	2020 가	:		63
[43]	2020 가	:		64
[44]	2020 가	:		65
[45]	2020 가	:		66
[46]	2020 가	:		67
[47]	2020 가	:		68
[48]	2020 가	:		69
[49]	2020 가	:		71
[50]	2020 가	:	가	 72
[51]	2020 가	:	2020~2021	 77

그림 차례

[1]		3
[2] 2020 가		10
[3] 2020 가	:	12
[4] 2020 가	:	14
[5] 2020		74
[6] 2020 가	:	77
[7] 2020 가		77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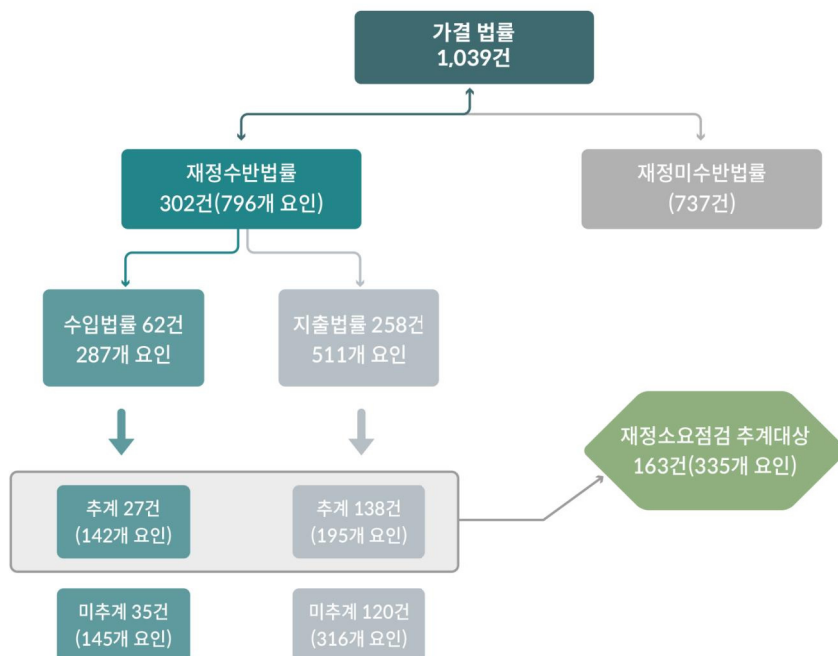
- (의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 기준선(baseline)이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재정소요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전망
 - 법률안이 가결된 후 재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재추계’한다는 점에서 법안비용추계와 구별
 - 법안비용추계는 발의단계에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비용의 증가(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추계
 - 재정소요점검은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변화(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를 추계
- (필요성) 재정소요점검은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예산과 법률의 연계성을 확인
 -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보완
 -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법안비용추계제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우리 예산과정은 가결 법률이 예산에 미치는 재정부담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 규모 확인 필요

-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의 시행 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 파악
- 재정소요점검 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예산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과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

□ (재정소요점검 대상) 2020년 가결된 법률 1,039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302건이며, 2021년부터 재정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은 163건(335개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법률(302건) 중 139건은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므로 재정소요점검 추계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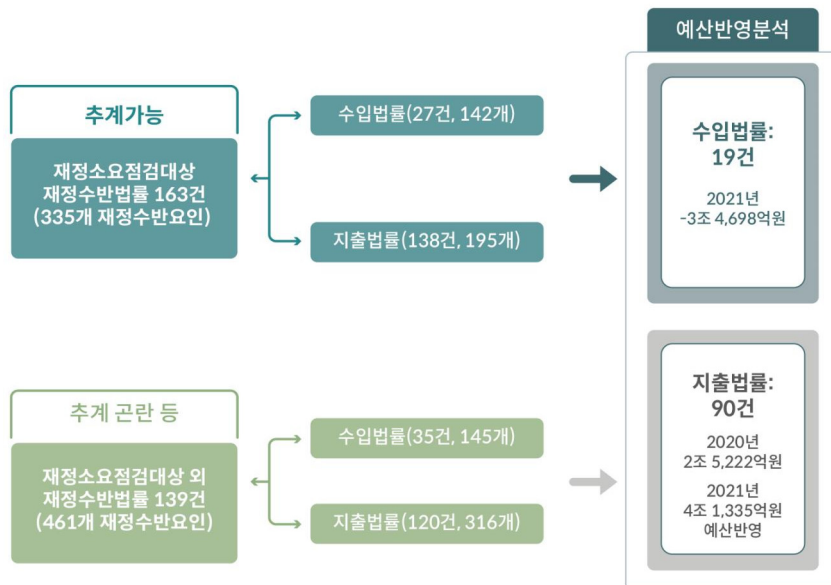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주: 재정소요점검 추계대상 163건에는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0년 가결 법률로서 추계가 가능한 163건 중 수입 법률 27건 및 지출법률 138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입법률 27건(142개 요인)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150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국가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25억원 증가 예상,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5,674억원 감소 예상
 - 지출법률 138건(195개 요인)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4,14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국가지출은 연평균 5조 6,503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7,642억원 증가 예상
 - 의무지출은 연평균 3조 3,544억원(국비 2조 7,338억원, 지방비 6,206억원), 재량지출은 연평균 3조 600억원(국비 2조 9,165억원, 지방비 1,436억원) 증가 예상
- (예산반영분석) 2020년 가결된 302건의 재정수반법률 중 109건이 예산에 반영

[2020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및 예산반영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 19건 제·개정에 따라 2021년도 국세수입 4조 7,198억원 감소, 국세외수입 1조 2,500억원 증가 등 2021년 총수입 3조 4,698억원 감소
 - (국세수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를 한시 상향 한 「소득세법」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한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으로 2021년 총수입 예산 4조 7,198억원 감소
 - (국세외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말 보유자금 중 초과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총수입 예산 1조 2,500억원 증가
- 지출법률 90건 제·개정에 따라 31개 부처 세부사업 예산으로 2020년 2조 5,222억원, 2021년 4조 1,33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액의 3.2%(2020년), 8.2%(2021년) 수준
 - (의무지출) 2020년 가결된 의무지출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20년 7,389억원, 2021년 1조 9,824억원 반영
 - (재량지출) 2020년 가결된 재량지출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20년 1조 7,833억원, 2021년 2조 1,511억원 반영

□ (예산미반영분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결된 지출법률에 대한 예산미반영 사례를 점검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모두 재량지출 관련 법률에서 미반영 사례가 나타남
 - 미반영된 주된 이유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계획 미수립’ 등으로 나타남
-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재정수반법률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비 투입이 전제되므로,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적시에 계획되고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매년 가결 법률의 예산미반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률과 예산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 (정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가 가결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¹⁾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²⁾을 의미
- 입법의 재정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79조의2³⁾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안비용추계⁴⁾와 유사하나,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⁵⁾이 가결된 후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수반요인을 ‘재추계’한다는 점에서 구별

- (법안비용추계) 법안 발의단계에서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

-
- 1) 기준선(baseline)이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재정소요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
 - 2) 해당 사업이나 수입의 전체 금액(총 재정소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가로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소요의 증감을 의미
 - 3)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4) 본 보고서는 의안비용추계 중 재정수반법률을 대상으로 한 ‘법안비용추계’를 중심으로 서술
 - 5)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법률안이 아닌 ‘법률’로 표현.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법률안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

하는 ‘비용’, 즉 ‘지출이 순증하거나 수입이 순감하는 경우’가 추계 대상⁶⁾

-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 등 재정환경 변화⁷⁾를 고려하여 지출 또는 수입의 순증 및 순감을 추계

□ (점검대상) 재정소요점검 대상은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이며, 분석단위는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법률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한 법률이며, 재정수반법률은 2개 이상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음
 - 재정수반법률의 조문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조문이거나, 여러 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인별로 추계
- 재정소요점검 대상 재정수반법률은 의원발의안·위원회안·정부제출안⁸⁾을 모두 포함
 - 법률안이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일부 위원회안 등도 사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⁹⁾

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재정환경 변화’는 발의단계 비용추계 시점과 달라진 거시경제지표 변화(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등)와 확정예산 등을 반영함을 의미

8) 법안비용추계는 의원발의안과 대안·수정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추계대상이나, 재정소요점검은 의원발의안, 대안·수정안은 물론 정부제출안으로 가결된 모든 재정수반법률이 추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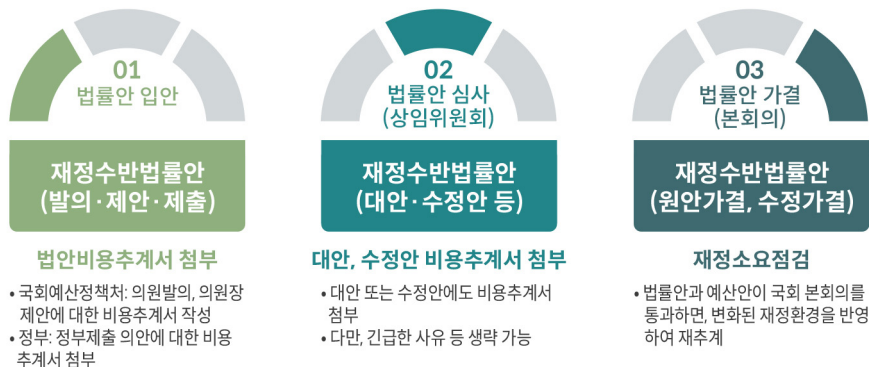
9) 모든 재정수반법률의 예상 소요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제·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재정사업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의 속성, 수입유형별, 지출유형별, 재정부담 주체별, 세법별(수입법률) 및 소관 위원회별(지출법률)로 제시됨

□ (점검시점)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이 가결된 시점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점에 실시하여 기준선을 정비

- 법안 가결 후: 법안 발의단계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사업 계획 등이 법안 가결 후 본격적으로 수립되거나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는 등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
- 예산안 확정 후: 제·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재추계
 - 정부 사업계획과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중기재정영향을 재추계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가.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보완

-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보완
 - 비용추계서는 법률안 입안단계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하므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는 경우 추계서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의 변동,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제안의 경우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¹⁰⁾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이 생략되는 경우,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 가능
 -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정부가 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이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

나. 가결 법률의 예산반영 여부 점검

-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법안비용추계 제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예산안 확정 후 법률안이 가결되어 예산심의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새로운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법률안 가결을 전제로 예산을 확정하였는데 관련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등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 발생

10) 「국회법」 제79조의2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산안에 편성되었는지, 국회가 최종
확정한 예산에 재정소요가 반영되었는지 점검
 - 재정수반법률의 제·개정은 재정투입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예산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예산과 법률이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양자의 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음¹¹⁾

다.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중기재정영향 분석

-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의 시행 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 분석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예상되는 추계액이므로
법 시행에 소요되는 실제 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가 가결 이듬해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

11) 예산법률주의와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재정총량 내에서 위원
회별 예산 및 재정수반법률안을 의회가 심의·확정하므로,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스코어키퍼링(Scorekeeping) 제도를 도입. 의회가 설정한 재정총량인 예산결의안 한도 내
에서 페이고(PAYGO) 준칙과 스코어키퍼링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재정수반입법을 관리. 향
후 우리 예산과정에서도 재정준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재정총량 내에서 재정수반입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총량을 결정하
기 위한 기준선을 매년 재설정하는 데 준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한국의 재정소요점검과 미국의 스코어키퍼(Scorekeeping)

미국의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은 재정수반법률안 및 예산결의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총액, 분야별, 지출성질별 등으로 집계하여 정해진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이다.¹²⁾ 「1974년 의회예산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재정수반법률안과 세출위원회에서 승인한 세출승인법률안이 의회가 작성한 예산결의안의 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가 주도하여 거시재정계획으로서 예산 총계, 세출의 기능별 배분, 예산 조정지침으로 구성된 ‘예산결의안’을 작성한다. 예산결의안이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재정수반법률안(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재정수반법안 혹은 세출위원회 승인법안)은 예산결의안의 한도 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결의안의 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를 제기(point of order)하여, 해당 법안의 심사를 중지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한도 수준을 넘는지 여부는 예산위원회가 총괄하며, 이 과정에서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제출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스코어카드(Scorecard)를 확인하는 데 이를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이라 한다.

예산심사가 종료된 후 집행한도를 넘는 지출이 결정된 경우에는 OMB(관리예산처,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스코어키퍼를 통해 일괄삭감조치(sequestration)를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예산과정에서 CBO, 상·하원 예산위원회, OMB 등 네 개 기관이 단계별로 재정소요점검자로 불리며,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에서 스코어키퍼제도는 의회의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으로서 자기교정적 기능¹⁴⁾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회의에 심사보고되는 개별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는 것이 비용추계(cost estimate)라면,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별 또는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미국의 스코어키퍼 제도이다.

재정소요점검은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활용되는 스코어키퍼(Scorekeeping)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소요재정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이 가결된 후 제·개정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재정수반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추계서와 스코어키퍼 장치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회의 법률안 심사와 예산 심사는 별도의 제도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법률안의 경우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안비용추계 제도를 보완하여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비용을 재추계하고, 가결된 법률이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집계하여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고 예산안 심사과정이 생략된 채 즉각적으로 재정에 반영되는 사업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¹⁵⁾ 예산과 법률이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양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은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회에는 조세지출 외에는 미국과 같은 재정준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수반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한도를 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재정준칙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입법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제도는 법률과 예산 간의 간극을 조절하고, 법률과 예산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2) 따라서 재정소요점검은 비용추계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며, 미시예산과 거시예산을 연결시키고 다년도 시계로 확대되어 재정을 관리하는 중기재정운용에 적합한 방식임. 정문중, 「비용추계의 법안 심사에 대한 영향 분석」, 예산현안분석 제28호, 국회예산정책처, 2009.
- 13)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의회예산처: 의회예산과정과 CBO의 역할」, 2012.
- 1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 예산정책보고서 제10호, 2010. 현성수 외, 「미국연방예산론」, 한울아카데미, 2005.
- 15) 예산과 법률의 심사과정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인데, 국회예산정책처(2019)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가결 되고 시행일이 도래하였는데 미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관련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예산심사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배정되어, 관련 예비비의 불용률이 평균 60%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 86~88쪽.

II.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1. 재정수반법률 현황

-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 1,039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302건이며, 전년 182건¹⁶⁾ 대비 120건 증가
 - 전체 가결된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 비중은 29.1%로 전년 32.2% 대비 3.1%p 감소
 - (수입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62건(전년 31건 대비 100% 증가)
 - 수입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302건 중 62건으로 20.5%를 차지
 - (지출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258건(전년 159건 대비 62.3% 증가)
 - 지출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302건 중 258건으로 85.4%를 차지
- 재정수반법률 302건 중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법률조문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수입법률 27건, 지출법률 138건 등 총 163건의 법률이 재정소요점검 추계대상

16) 2019년 국회가 가결한 565건의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은 182건으로, 이 중 수입의 재정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31건, 지출의 재정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159건으로 분석됨(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0. 13쪽.)

[표 1]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추계 현황

(단위: 건, %)

재정수반법률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법률 ¹⁾ (비중)	62 (20.5)	258 (85.4)	302 (100.0)
추계 ²⁾ (비중)	27 (8.9)	138 (45.7)	163 (54.0)
미추계 ³⁾ (비중)	35 (11.6)	120 (39.7)	139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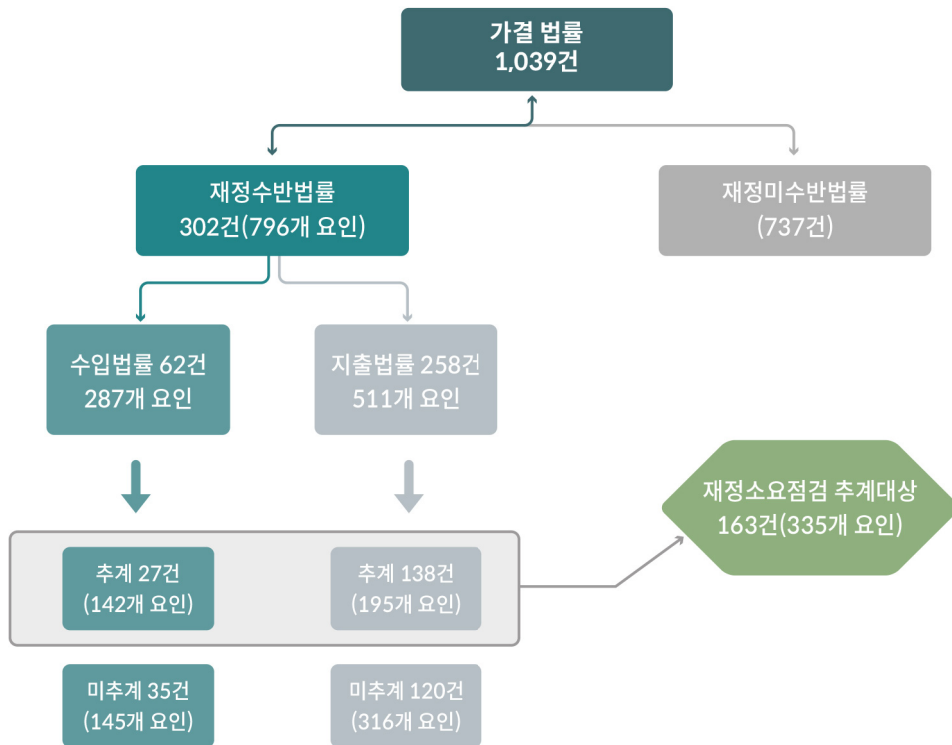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8건(6.0%)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0.7%) 포함

3)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6건(5.3%)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수반요인 현황

- 202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는 796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법률 조문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추계가 곤란한 461개 요인을 제외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라 함)¹⁷⁾가 추제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335개¹⁸⁾
- 202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796개로 법률 1건당 평균 2.6개 요인을 포함
 - (수입법률) 2020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287개로 법률 1건당 평균 4.6개
 - (지출법률) 2020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511개로 법률 1건당 평균 2.0개
 - 수입법률의 경우 법률 1건당 재정수반요인이 지출법률보다 약 2.6개 더 많은데, 이는 수입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법에 다수의 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¹⁹⁾

[표 2] 2020년 가결 법률 재정수반요인 추계 현황

(단위: 개, %)

재정수반요인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요인 ¹⁾	287	511	796
(비중)	(36.1)	(64.2)	(100.0)
추계 ²⁾	142	195	335
(비중)	(17.8)	(24.5)	(42.1)
미추계	145	316	461
(비중)	(18.2)	(39.7)	(57.9)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요인 2개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요인 2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7) NABO는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약어를 의미

18)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2개의 재정수반요인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2106281) 개정건의 재정수반요인은 기금수입의 증가와 의무지출의 발생을 동시에 유발.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2105485) 개정건의 재정수반요인 또한 기금수입의 증가와 의무지출의 발생을 동시에 유발

19)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2020.12.2.의결) 개정안의 경우 47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 및 위원회별 현황

□ (제안자별) 재정수반법률 302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제안이 198건(6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발의 86건(28.5%), 정부제출 18건(6.0%) 순

- 가결 법률 1,039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위원회제안 486건(4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발의안 453건(43.6%), 정부제출안 100건(9.6%) 순

[표 3]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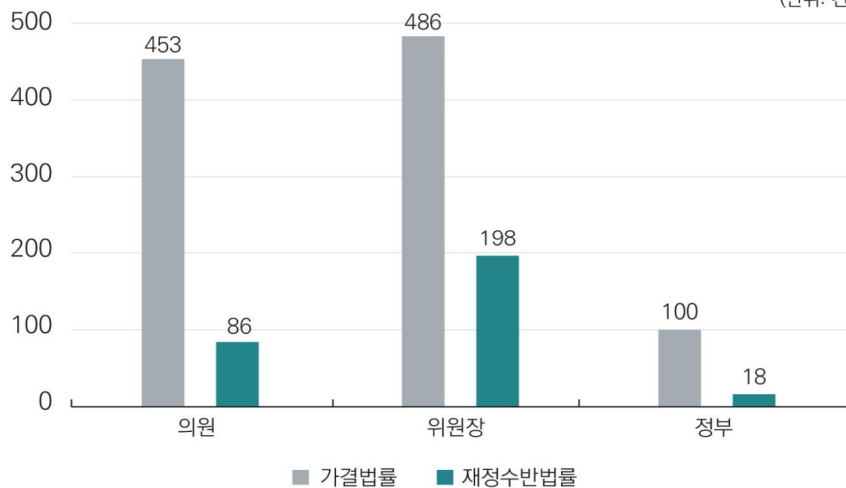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의원	위원장	정부	합계
재정수반법률 (비중)	86 (28.5)	198 (65.6)	18 (6.0)	302 (100.0)
가결 법률 (비중)	453 (43.6)	486 (46.8)	100 (9.6)	1,039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은 행정안전위원회(59건), 국토교통위원회(39건), 환경노동위원회(27건) 순

- 가결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50.9%), 국방위원회(50.0%), 기획재정위원회(42.9%) 순²⁰⁾

[표 4]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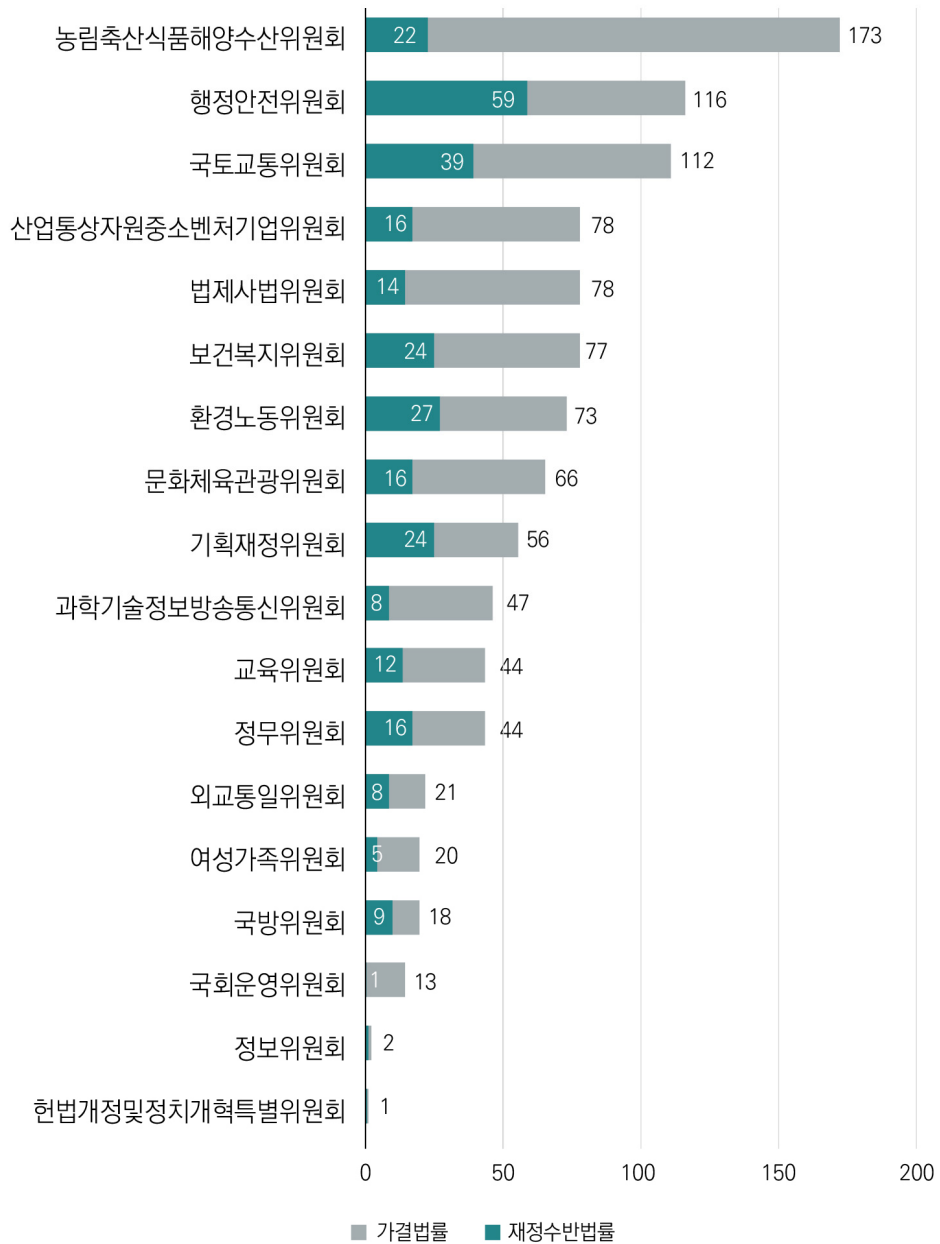
위원회	가결법률(A)	재정수반법률(B)	비중(B/A)
국회운영위원회	13	1	7.7
법제사법위원회	78	14	17.9
정무위원회	44	16	36.4
기획재정위원회	56	24	42.9
교육위원회	44	12	27.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7	8	17.0
외교통일위원회	21	8	38.1
국방위원회	18	9	50.0
행정안전위원회	116	59	5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6	16	2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73	22	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8	16	20.5
보건복지위원회	77	24	31.2
환경노동위원회	73	27	37.0
국토교통위원회	112	39	34.8
정보위원회	2	1	50.0
여성가족위원회	20	5	25.0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1	100.0
합 계	1,039	302	2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 재정수반법률 건수가 적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는 제외함

[그림 4]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I.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수입법률

1. 현 황

- 202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에 영향을 미친 법률은 62건(재정수반요인 287개)
 -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35건(재정수반요인 145개)을 제외한 27건의 142개 재정수반요인이 재정소요점검 대상
- (수입유형별) 재정수반법률 중 조세수입 관련 법률 30건, 세외수입 관련 법률 30건, 기금수입 관련 법률 4건²¹⁾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조세수입 20건, 세외수입 3건, 기금수입 4건에 대한 추계결과 제시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을 수반하는 법률 54건,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수반하는 법률 11건²²⁾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국가 수입 관련 24건, 지방자치단체 수입 관련 3건에 대한 추계 결과 제시

21)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2건(「관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포함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3건(「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포함

[표 5] 수입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현황: 유형별·주체별

(단위: 건, 개)

구분		수입유형별 ³⁾			재정주체별 ⁴⁾	
		조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국가	지방
재정수반법률 ¹⁾ (재정수반요인)	62 (287)	30 (241)	30 (42)	4 (4)	54 (213)	11 (76)
재정소요점검 법률 ²⁾ (재정소요점검 요인)	27 (142)	20 (135)	3 (3)	4 (4)	24 (85)	3 (57)

주: 1) 수입변동을 초래하는 수입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2)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수입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3)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2건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3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0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가. 소비 및 투자 활성화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 (「법인세법」)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10개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일원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말에서 2022년말까지 연장

나. 서민·중소기업 지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세자 기준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통관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말에서 2022년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말에서 2022년말까지로 연장

다. 과세형평 제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소득세법」), 법인·다주택자 중심의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강화(「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p 인상하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해 과세기준액(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제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법인 및 다주택자 중심의 주택분 세율 인상

3.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개요

- 2020년 가결된 수입법률 62건 중 27건 법률의 142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150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표 6]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주체별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합계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입 유형별	조세수입		-6,391	-5,674	-12,066
	국세외수입	기금수입	5,494	-	25,216
		세외수입	19,722	-	
	합 계		18,825	-5,674	13,150

주: 1)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유형별) 수입유형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²³⁾

- (조세수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소득세법」 개정과 주택분 세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은 세입 증가요인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세입 감소요인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2,066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세외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용용도에 공적상환기금 출연을 추가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9,722억원 세외수입 증가 예상

23)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 (기금수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494억원 기금수입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수입 재정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

- 국가 수입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25억원 증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연평균 5,674억원 감소
 - (국가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국가 수입 감소가 연평균 3조 8,940억원, 「예금자보호법」, 「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른 국가 수입 증가가 연평균 5조 7,765억원으로 추계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25억원의 국가 수입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 수입) 「지방세법」, 「지방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674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수입 감소 예상

나. 조세수입

(1) 요약

- 2020년 조세수입 관련 법률의 가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2,066억원의 조세수입²⁴⁾ 감소 예상
- 조세수입 증가는 주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고, 조세수입 감소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소득세법」) 2020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515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

24) 세수효과는 NABO의 추정치임

- (「종합부동산세법」) 2020년 두 차례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711억원 수입 증가 예상
 - 1차 개정(2020.8.4.): 법인 및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분 세율 인상 등 세 부담 강화로 인한 수입 증가
 - 2차 개정(2020.12.2.):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함에 따른 수입 증가
-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2,412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표 7] 2020년 조세수입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수반법률 (주요 재정수반요인)	제안자 (의결일)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조 세 수 입	국 세 수 입	소득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위원장 (2020.12.2.)	15,515	77,575	
		법인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		-119	-595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2,662	-13,309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세율 인상 등)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20.8.4.)	13,195	65,975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변경)	위원장 (2020.12.2.)	516	2,582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위원장 (2020.3.17.)	-2,420	-12,101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등)	위원장 (2020.4.29.)	60	29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위원장 (2020.12.2.)	-30,051	-150,256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정부 (2020.12.2.)	-469	-2,343	
		개별소비세법 (담배 과세대상 확대 등)		170	848	
		국세징수법 (압류 후 추심매각 시기 신설 등)	위원장 (2020.12.2.)	36	180	
	인지세법 (소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등)	위원장 (2020.3.6.)	-158	-791		
	기타 ¹⁾			-4	-19	
	소 계			-6,391	-31,955	
	지 방 세 수 입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등)	위원장 (2020.12.9.)	-2,365	-11,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등)	위원장 (2020.1.9.)	-1,061	-5,304	
(협동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위원장 (2020.12.9.)	-2,247	-11,237		
소 계			-5,674	-28,372		
조세수입 합계				-12,066	-60,328	

주: 1) 기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주세법」 등이 포함되며,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세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소득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소득세법」의 주요 특징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체계 마련 등으로 요약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소득구간의 세율(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
- 금융투자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체계 마련: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양도·대여)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도입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2023년부터 전면 과세 시행: 2023년부터 채권 양도소득 및 소액주주의 상장주식도 양도 소득 과세대상으로 전환
 - 가상자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 (재정소요점검 결과) 「소득세법」(2020.12.2.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515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평균 9,645억원 수입 증가 예상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에 따른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연평균 5,515억원 수입 증가 예상
- 기타 금융투자소득(펀드, ETF)에 대한 과세체계 도입²⁵⁾: 연평균 370억원 수입 증가 예상

25)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여 2단계 누진세율(20%/25%)로 분류과세

[표 8]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소득세법 (위원장, 2020.12.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9,645	48,227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5,515	27,575
	기타 금융투자소득(펀드, ETF) 과세체계 도입	370	1,848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5	-75
합 계		15,515	77,5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법인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법인세법」의 주요 특징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으로 요약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율 하향 조정
 - 미제출 0.5% → 0.25%, 3개월 내 제출 0.25% → 0.125%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가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부터 적용)
- (재정소요점검 결과) 「법인세법」(2020.12.2.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19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근로소득 간이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연평균 119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연평균 수입증감 효과는 0

- 2021년 재정수입을 1억원 감소시키지만, 2022년 수입을 1억원 증가시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증감 효과는 0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2025년까지 수입증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30년 이후 발생

[표 9]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법인세법 (위원장, 2020.12.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19	-595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고 사립학교법인 추가	-1)	-
	합 계	-119	-595

주: 1)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증감 효과는 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부가가치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으로 요약
 -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 → 8,000만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등 공제 축소
 -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3,000 → 4,800만원)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항구화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20.12.31.까지 → 항구화)
- (재정소요점검 결과) 「부가가치세법」(2020.12.2.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6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연평균 2,24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연평균 37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연평균 4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0]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부가가치세법 (위원장, 2020.12.2.)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2,245	-11,226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373	-1,866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항구화	-43	-217
합 계		-2,662	-13,3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종합부동산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특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신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으로 요약
- 주택분 세율 인상 등: 법인·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세 부담 강화
 - 신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수탁자 → 위탁자

[표 11]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기준

(단위: %)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과세기준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개인) 좌동, (법인) 미적용
서울	초과누진세율 구조 1~2주택 ¹⁾ : 0.5~2.7 3주택 이상: 0.6~3.0	(개인) 초과누진세율 구조 1~2주택 ¹⁾ : 0.6~3.0 3주택 이상: 1.2~6.0 (법인) 차등비례세율 구조 1~2주택 ¹⁾ : 3, 3주택 이상: 6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10~30	20~40
세부담상한제	1주택, 일반 2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개인) 1주택, 일반 2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300 (법인) 미적용

주: 1)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간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결과) 「종합부동산세법」(2020.8.4. 및 12.2.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711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주택분 서울 인상 등: 연평균 1조 3,195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연평균 516억원 수입 증가 예상

[표 12] 「종합부동산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종합부동산세법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20.8.4.)	주택분 서울 인상 등	13,195	65,975
종합부동산세법 (위원장, 2020.12.2.)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변경	516	2,582
합 계		13,711	68,5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조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특징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투자세액공제 개편 등으로 요약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통관 및 관련 서비스업 추가
 - 감면율 조정: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에 대한 감면율 우대 폐지(30% → 기업 규모, 위치 등에 따라 5~30%)
 - 적용기한 2년 연장: 2020.12.31. → 2022.12.31.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로 일원화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2020.3.17., 4.29. 및 12.2.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2,41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8,20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8,17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연평균 4,267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3]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0.3.17.의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2,420	-12,101
조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0.4.29.의결)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등	60	299
조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0.12.2.의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586	12,93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8,203	-41,014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8,173	-40,865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4,267	-21,335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3,570	-17,850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88	-6,939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1,312	-6,558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259	-6,296
	기타 ¹⁾	-4,466	-22,331
합 계		-32,412	-162,058

주: 1) 연평균 1,000억원 미만 재정수반요인의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기타 국세 관련 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그 밖의 국세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증
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소액모바일 상품권(3~5만원권)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 과세대상 확대 등으로 요약
- (재정소요점검결과) 「증권거래세법」(2020.12.2.의결) 개정으로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69억원, 「인지세법」(2020.3.6. 의결)
개정으로 동 기간 연평균 158억원 등의 수입 감소, 「개별소비세법」(2020.

12.2.의결) 개정으로 동 기간 연평균 170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증권거래세율 인하: 연평균 469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기간통신역무 가입신청서 및 3~5만원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비과세: 연평균 15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담배 과세대상 확대: 연평균 170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표 14] 기타 국세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개별소비세법 (정부, 2020.12.2.의결)	담배 과세대상 확대 등	170	848
국세징수법 (위원장, 2020.12.2.의결)	압류 후 추심매각 시기 신설 등	36	1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원장, 2020.12.2.의결)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31	155
증권거래세법 (정부, 2020.12.2.의결)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469	-2,343
인지세법 (위원장, 2020.3.6.의결)	소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등	-158	-791
관세법 (위원장, 2020.12.2.의결)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 저율관세 적용 등	-20	-100
주세법 (위원장, 2020.12.2.의결)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세 비과세	-10	-50
국세기본법 (위원장, 2020.12.2.의결)	상속세 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7	-35
합 계		-427	-2,1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지방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지방세법」의 주요 특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p 하향
 - 주택분 재산세율: 일반세율 0.1~0.4%, 특례세율 0.05~0.35%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법」(2020.12.9.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366억원 지방세 수입 감소 예상

[표 15]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지방세법 (위원장, 2020.12.9.의결)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965	4,823
	등록면허세 연납시 연납공제율 미적용	1	3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2,702	-13,512
	법인지방소득세 과표 계산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적용	-560	-2,800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사업소세 전환에 따른 과세구간 간소화 및 세율 인하	-69	-345
합 계		-2,366	-11,8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 2020년 가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특징은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요약

-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²⁶⁾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과 관련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2020.12.31. → 2022.12.31.

※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취득 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3년간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9. 및 12.9.의결)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308억원 지방세 수입 감소 예상

[표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0.1.9.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367	-1,836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235	-1,176
	기타 ¹⁾	-458	-2,292
	소 계	-1,061	-5,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원장, 2020.12.9.의결)	협동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525	-2,62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경감 신설	-450	-2,250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88	-1,440
	기타 ¹⁾	-984	-4,920
소 계		-2,247	-11,237
합 계		-3,308	-16,540

주: 1) 연평균 200억원 미만 재정수반요인의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6)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사업장 집단화,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공동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

다. 국세외수입

(1) 기금수입

- (재정수반요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로 요약
- (재정소요점검 결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기금수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494억원 증가 예상

[표 17] 기금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장, 2020.5.2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95	47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장, 2020.12.9.)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3,708	18,5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원장, 2020.1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1,661	8,3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원장, 2021.11.19.)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31	153
합 계		5,494	27,4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비례대표 기탁금 하향, 평택 미군기지 이주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무상양여 등으로 요약

- (재정소요점검 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등을 규정한 「예금자보험법」 등 개정으로 세외수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9,722억원 증가 예상

[표 18] 세외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예금자보험법 (정부, 2020.12.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19,700	98,500
공직선거법 (위원장, 2020.3.17.)	비례대표 기탁금 하향	-1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부, 2020.12.2.)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 등	23	115
합 계		19,722	98,6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20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

가. 국세수입

- 2020년 가결된 법률 중 2021년 총수입²⁷⁾ 예산에 반영된 국세수입 관련 법률은 18건으로 분석
- 2020년 국세수입 관련 법률이 2021년 예산에 반영된 세법개정으로 4조 7,198억원 감소²⁸⁾
- 소득세 분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한시상향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5,446억원 세수 감소

27) 예산반영분석의 예산은 2021년 본예산(총수입) 기준

28) 지방자치단체 수입 관련 법률 2건에 대한 예산반영액은 확인 곤란

- 법인세 분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등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조 2,248억원 세수 감소
- 부가가치세 분야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조 4,720억원 세수 감소
- 기타 세목²⁹⁾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으로 5,375억원 세수 증가

[표 19] 2020년 국세수입 관련 가결 법률의 2021년 세입예산 반영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세수효과 ¹⁾	주요 재정수반요인
총국세	-47,198	
일반회계	-51,540	
○ 내국세	-57,375	
1. 소득세	-5,44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한시상향 등
2. 법인세	-12,248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등
3. 상증세	-24	영농자녀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 부가가치세	-34,72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등
5. 개별소비세	-730	전기승용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6. 증권거래세	-4,048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등
7. 인지세	-159	소액 모바일 상품권 비과세 등
8. 과년도수입	-	
○ 교통세	-60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 관세	-20	
○ 교육세	-27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종합부동산세	6,740	주택분 세율 인상 등
특별회계	4,342	
○ 주세	-8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세 비과세
○ 농특세	4,350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주: 1)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국회 수정사항을 감안한 정부 추계 세수효과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29) 이때 기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함

나. 국세외수입

- 2020년 가결 법률에 따라 국세외수입 중 세외수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 건이 세입예산안에 편성
 -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말 보유자금 중 1조 2,5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동 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편성
- 기금수입은 예산안 제출 이후 법률 개정으로 예산안 미편성

[표 20] 2020년 국세외수입 관련 가결 법률 2021년 세입예산 반영 현황

(단위: 억원)

	수입법률안 (A)	국회 수정 (B)	가결 수입법률 효과 (A+B)
국세외수입	12,500	-	12,500
세외수입	12,500	-	12,500
기금수입	-	-	-

주: 2020년 세입부수법률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지출법률

1. 현 황

-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258건(재정수반요인 511개)
 -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120건(재정수반요인 316개)을 제외한 법률 138건 195개의 재정수반요인이 추계대상³⁰⁾
- (지출유형별)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15건, 재량지출은 246건³¹⁾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의무지출 13건, 재량지출 125건에 대한 추계결과 제시
- (재정주체별)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 239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 92건³²⁾
 - 이 중 추계가 가능한 국가 지출법률 132건, 지방자치단체 지출법률 25건에 대한 추계결과 제시

30) 추계가 가능하지 않은 120건(재정수반요인 316개)의 재정수반법률의 경우, 정부가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의 미비, 사업계획 수립 필요, 시범사업 준비, 비용 계산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재정소요를 판별하기 어려워 재정소요 점검 시 추계 대상에서 제외

3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3건 포함

3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73건(재정소요점검대상에는 19건) 포함

[표 21] 지출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유형별·주체별

(단위: 건, 개)

구분		지출유형별 ³⁾		재정주체별 ⁴⁾	
		의무지출	재량지출	국가	지방
재정수반법률 ¹⁾ (재정수반요인)	258 (511)	15 (25)	246 (486)	239 (449)	92 (157)
재정소요점검 법률 ²⁾ (재정소요점검 요인)	138 (195)	13 (23)	125 (172)	132 (187)	25 (28)

주: 1) 지출변동을 초래하는 지출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지출법률을 제외한 후 추계한 지출 재정수반법률 및 재정수반요인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3건 포함

4)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73건(재정수반요인 95개), 재정소요점검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을 동시 유발하는 법률 19건(재정수반요인 20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위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 환자이송과 관리 및 사회적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액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근거 마련(2020.2.28.시행)
-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및 숙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20.8.12.시행)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관 임명 및 교육(2020.9.5.시행)
-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액 긴급 지원(2021.1.1.시행)

○ 「항공보안법」 개정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에 비대면 시스템 도입(2020.6.9.시행)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제·개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10.시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2021.7.1.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2021.7.1.시행)
-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한 법률 제·개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2020.1.21.시행)
 -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고용촉진 지원(2020.8.5.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 보전(2021.1.1.시행)
 -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2020.1.21.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다른 법률에 따라 급여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34세 이하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2021.4.21.시행)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어가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등(2021.3.1.시행)

다. 수소경제·탄소중립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사회기반 조성

□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스마트 기술 도입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탄소소재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기관 지정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2021.2.5.시행)
- 「탄소소재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2020.11.19.시행)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스마트물류센터 및 첨단물류센터 지원(2020.10.20.시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자율주행정보 기록·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 등(2020.10.8.시행)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센터, 치유농업연구소 구축 등(2021.3.25.시행)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자원과 건강관리, 휴양서비스가 결합된 해양치유산업 기반 마련(2021.2.19.시행)

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 (취약계층 안전한 환경 조성)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등)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어린이안전교육 지도·감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동승보호자도 추가(2020.11.27.시행)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신규 설치,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 실태조사 3년 주기 실시(2020.11.20.시행)

-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2020.10.1.시행)
 - 「교통안전법」개정: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2021.1.1.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 피해자의 지역전담 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운영(2020.6.9.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안전취약계층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취약계층 추가(2021.6.10.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전기안전점검 시 비용 지원, 전기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2021.4.1.시행)
 - 「환자안전법」 개정: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2020.7.30.시행)
- (인권보호) 인권 사각지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국민체육진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20.9.10.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2021.1.1.시행)

3.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 개요

- 2020년 가결된 지출법률 258건 중 138건 법률의 195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³³⁾,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4,144억원 지출 증가 예상

33)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본예산을 고려하여 가결된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법률에 대한 사업비 추계결과

[표 22]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형별·주체별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별		합계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27,338	6,206	33,544
	재량지출	29,165	1,436	30,600
합 계		56,503	7,642	64,144

주: 1)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³⁴⁾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인 ‘재량지출’³⁵⁾로 구분

-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므로, 재정수반법률의 제·개정 후 시행일에 맞추어 사업비가 신속히 반영
-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로서, 재정수반법률의 제·개정으로 법률에 지출 근거가 마련되어도 행정부가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가 확정할 필요

□ 추계가 가능한 138건의 재정수반법률 중 의무지출은 13건, 재량지출은 125건

□ (의무지출) 의무지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3,544억원 지출 증가 예상

34) 「국가재정법」 제7조제1항제4호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35) 「국가재정법」 제7조제1항제4호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 이 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2조 7,338억원(8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6,206억원(18.5%)으로 추계
- 재정소요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6,889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이 중 국비는 연평균 2조 1,082억원, 지방비는 5,807억원 증가 예상

[표 23]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유형별

(단위: 억원)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의무지출	33,544	167,721
(국비)	27,338	136,691
(지방비)	6,206	31,030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무지출 관련 법률 건수(13건)가 재량지출 관련 법률 건수(125건)보다 9.6배가량 적지만,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소요는 전체 추가재정소요의 52.3%를 차지
 -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소관 개정 법률과 관련
- (재량지출) 재량지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60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이 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2조 9,165억원(95.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연평균 1,436억원(4.7%)으로 추계
 - 재량지출의 경우 사업 첫 해인 2021년에 시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 전체 사업의 일부만 반영되는 경향
 - 재정소요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량지출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722억원의 국비 증가 예상

[표 24]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유형별

(단위: 억원)

지출유형별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재량지출	30,600	153,002
(국비)	29,165	145,824
(지방비)	1,436	7,178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0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는 연평균 5조 6,503억원, 지방자치단체는 연평균 7,64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지출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주로 국가가 부담(88.1%)할 것으로 예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전체의 11.9%

[표 25]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부담주체별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국가	56,503	282,515
지방자치단체	7,642	38,208
합 계	64,144	320,722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0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지출 분야의 재정소요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9,667억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평균 1조 9,196억원 등의 지출 증가를 포함하여 연평균 6조 4,14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기초연금액의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 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2조 9,66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구직자에 대해 구직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9,196억원 지출 증가 예상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중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조기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조 487억원 지출 증가 예상

[표 26] 2020년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건, 억원)

위원회	지출법률 건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2025년)	
		연평균	합계
국회운영위원회	1	3	14
법제사법위원회	5	346	1,732
정무위원회	8	124	619
기획재정위원회	1	2	9
교육위원회	1	73	36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23	113
외교통일위원회	1	2	8
국방위원회	6	323	1,613
행정안전위원회	21	10,487	52,43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143	717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17	1,296	6,48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11	912	4,558
보건복지위원회	15	29,667	148,333
환경노동위원회	20	19,196	95,982
국토교통위원회	16	612	3,061
여성가족위원회	5	936	4,681
합 계	138	64,144	320,722

주 1. 지출 재정소요점검은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120건을 제외한 법률 138건
(195개 재정수반요인)의 추계금액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

가. 개요

- 2020년 가결된 법률 중 2020년과 2021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90건³⁶⁾이며, 이들 법률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된 규모³⁷⁾는 2020년 2조 5,222억원, 2021년 4조 1,335억원으로 집계됨
 - 예산반영여부는 예산에 편성된 경우와 법률안 가결시점과 예산편성시점 차이로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나 예비비 등으로 집행될 경우를 포함
 - 지출법률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건은 법률안이 가결된 시점과 예산 편성과 확정시점의 차이로 인해 미편성되었거나, 시행일 미도래, 기존사업예산으로 추진 및 사업계획없음,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삭감 등 다양한 사유가 나타남³⁸⁾

[표 27]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반영 현황: 2020~2021년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반영액	25,222	41,3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0년 예산반영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지출 관련 사업비, 법률 가결을 전제로 사업비를 편성한 사례 등 2조 5,222억원 반영
 - 2020년 예산반영액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증원, 손실보상 긴급지원 등을 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 2020년 예산에는 9건 법률, 2021년 예산에는 90건의 법률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37) 2020년에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소관 위원회 및 부처별 2020년과 2021년 예산 반영 규모는 기존에 다른 법 규정에 따라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추가나 신규로 편성된 건만을 집계. 다만, 2020년에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법 통과가 2021년으로 늦어진 경우에는 법률 제·개정의 영향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으며, 사업비가 미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집행 등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2020년 법률 제·개정의 효과로 간주하여 포함함

38) 2020년 예산에 미반영된 주요 사례는 59쪽에서 확인 가능함

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집행

- 2020년에 가결된 법률 중 법률안 가결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미리 편성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조기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단가를 인상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직자를 지원하도록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2021년 예산반영액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 완화 및 연금액 인상 등 4조 1,335억원 반영

- 2021년 예산반영액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비 단가를 인상 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에 따른 의무지출 관련 사업비 편성

나. 2020·2021년 총지출 예산반영 현황

□ 2020년 가결된 법률 관련 사업비가 2020년 및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규모를, 총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액 중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0년 총지출³⁹⁾은 전년 대비 79조 3,36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3.2%인 2조 5,222억원이 2020년 제·개정된 법률의 효과
- 2021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0조 1,80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8.2%인 4조 1,335억원이 2020년 제·개정된 법률의 효과

39) 연도별 총지출(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의미)이며, 추가경정예산 기준

[표 28]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반영규모와 총지출변동 현황: 2020~2021년

(단위: 억원, %)

	2020년	2021년
예산반영액(a)	25,222	41,335
총지출 전년대비 증액(A)	793,361	501,801
비중(a/A)	3.2	8.2

주: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위원회별·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 2020년 가결 법률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미친 영향을 위원회별 및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0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라 2020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위원회(8개 부처) 소관 예산에 2조 5,222억원 반영
 - 2020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위원회(73.8%), 행정안전위원회(25.0%), 환경노동위원회(1.0%) 순
 - 이 중 예산반영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총 1조 8,616억원이 반영되어 전체 반영액의 73.8%를 차지하며,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 6,298억원(25.0%), 고용노동부 소관 257억원(1.0%) 순
- 2020년 가결 지출법률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4개 위원회(31개 부처) 소관 예산에 4조 1,335억원 반영
 - 2021회계연도 기준, 보건복지위원회(49.9%), 행정안전위원회(26.1%), 환경노동위원회(17.9%) 순
 - 이 중 예산반영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총 2조 641억원이 반영되어 전체 반영액의 49.9%를 차지하며, 행정안전부 소관 1조 793억원(26.1%), 고용노동부 소관 7,055억원(17.1%) 등

[표 29] 2020년 가결 법률의 위원회 및 부처별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

위원회명	부처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예산반영액	비중	예산반영액	비중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	-	1.2	0.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	132	0.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	-	31	0.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	76	0.2
	공정거래위원회	-	-	0.2	0.0
	금융위원회	-	-	0.8	0.0
	국가보훈처	-	-	17	0.0
교육위원회	교육부	4.5	0.0	51	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4	0.01
	방송통신위원회	-	-	12	0.03
	원자력안전위원회	-	-	6	0.01
국방위원회	국방부	-	-	16.6	0.0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	-	17	0.04
	병무청	-	-	162	0.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6,298	25.0	10,793	26.1
	소방청	-	-	7	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2	0.1	132	0.3
	문화재청	4	0.0	27	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	4.5	0.0
	해양수산부	9.9	0.0	532	1.3
	농촌진흥청	-	-	29.6	0.1
	산림청	-	-	12	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	352	0.9
	중소벤처기업부	-	-	22	0.1
	특허청	-	-	12	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8,616	73.8	20,641	49.9
	질병관리청	-	-	2	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0.2	0.0	349	0.8
	고용노동부	257	1.0	7,055	17.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	377	0.9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	462	1.1
합 계		25,222	100.0	41,335	100.0

주: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 2020년 가결된 지출법률은 2020년 예산에 2조 5,222억원, 2021년 예산에 4조 1,335억원이 편성
- (지출유형별: 의무지출) 202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의무지출은 2020년 7,389억원, 2021년 1조 9,824억원
- (지출유형별: 재량지출) 202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재량지출은 2020년 1조 7,833억원, 2021년 2조 1,511억원

[표 30] 2020·2021회계연도 총지출 및 지출유형별 예산반영 현황

(단위: 억원)

지출유형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	
	2020년 예산반영액	2021년 예산반영액
의무지출	7,389	19,824
재량지출	17,833	21,511
합 계	25,222	41,335

주: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2018~2020년

가. 2018~2019년 가결 법률 중 예산미반영 유형별 분석

(1) 개요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이 2020년과 2021년 예산에 반영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예산반영여부는 법률 제·개정에 따라 행정부가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기존 사업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2020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미반영 사례는 위원회 소관부처별로 분석함

(2)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 예산미반영 사유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된 경우, 소관 부처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미반영된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의결 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가) 2018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미반영 현황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 소관 부처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농촌진흥청 소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8.12.7.의결, 2019.7.9.시행) 개정은 지역특화작목 발전협회의 사업 경비를 지원

[표 31]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2018년	2018.12.7.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19.7.9.)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 지원	법률 통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사 시 미편성
	2018.12.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7.9.)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관리 훼손된 산림의 실태 조사 산림복원 관련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법률 통과로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사 시 미편성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1년 10~11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계획 미수립

- 법률 제·개정 후 사업계획 미수립, 시범사업 실시 및 계획 수립 중이라고 답한 사례
 - 해양수산부 소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12.27. 의결, 2020.1.16.시행) 개정은 갯벌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유이방지 및 폐기물 수거·처리조사에 관한 사항
 - 환경부 소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8.5.28.의결, 2019.6.13.시행) 제정은 친환경 활용을 위한 기반사업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표 32]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미수립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2018년	2018.12.27. (해양수산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2020.1.16.)	갯벌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 수거·처리조사 등	갯벌실태조사 실시 후 관련 계획 수립 예정
	2018.5.28. (환경부)	담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019.6.13.)	담 친환경 활용 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계획 수립 신청 및 승인 후 예산반영 추진 가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2018.5.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동물원관리 종합계획 수립(2020년 12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중
	2018.1.30. (우정사업본부)	우편법 (위원장, 2018.8.22)	우편업무의 전자화	관련사업 실시여부 미정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1년 10~11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타 그 밖의 사유

- 그 밖에도 행정부 내 사업 우선순위 고려 및 재원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된 사례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8.12.7. 의결, 2019.7.9.시행) 개정은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과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표 33]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기타 그 밖의 사유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2018년	2018.2.20.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법 (위원장, 2018.9.13.)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 통일교육 의무 실시	교육관련 운영(교육실시안내, 강사단 운영 등)예산이 필요하나, 법률에 교육실시 의무가 교육대상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예산 미반영
	2018.5.28.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18.9.13.)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2021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운영, 2022년은 공공기관 자체 운영으로 예산 미편성 2023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할 예정
	2018.12.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7.9.)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센터 업무 수행 비용 지원 산림복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위임 위탁할 업무의 구분 및 산림복원 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 마련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 중으로 제도 확정 후 예산 요구 예정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1년 10~11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2019년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미반영 현황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 소관 부처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4.5. 의결, 2020.5.1.시행) 개정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서비스를 정부가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10.31.의결, 2019.12.3.시행) 개정은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위원장, 2019.10.31. 의결, 2019.12.3.시행) 개정 건은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에 관

한 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위원장, 2019.10.31. 의결, 2021.12.4. 시행) 개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확대에 따른 비용 지원

[표 34]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2019년	2019.8.2.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11.)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사 시 미편성 예산편성 필요성 검토 중
	2019.10.31.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원장, 2020.5.27.)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실시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법률 통과로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사 시 미편성
	2019.10.31.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위원장, 2019.12.3.)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편성 2023년도 예산 요구 예정
	2019.10.31.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확대	법률 통과로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사 시 미편성
	2019.10.31.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12.3.)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	2021년 예산요구 하였으나, 정부안에 미반영
	2019.4.5.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5.1.)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지원	법률 통과로 소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사 시 미편성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1년 10~11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계획 미수립

- 법률 제·개정 후 사업계획 미수립, 시범사업 실시 및 계획 수립 중이라고 답한 사례

- 국토교통부 소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동영의원 대표 발의, 2019.4.5.의결, 2020.5.1.시행),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4.5.의결, 2020.5.1.시행) 등

[표 35]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사업계획 미수립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2019년	2019.8.2.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8.28.)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의 육성, 꿀벌 신품종 육성,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단계로 예산규모 및 필요성 검토 중
	2019.10.31. (문화재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설훈의원 대표발의, 2020.6.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022~2023년 실태조사 실시 예정
	2019.10.31.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4.)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 사업시행	전통재료별 특성 및 전통재료의 인증을 위한 기준 마련 추진 중
	2019.11.19.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0.3.11.)	석탄산업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용역예산 활용 예정
	2019.4.5.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5.1.)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구축,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자율주행 관련 산업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으로, 산업계의 구체적인 직무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 예정
	2019.4.5. (국토교통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20.5.1.)	드론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 마련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드론사용사업자 중 우수사업자 선정	지원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후 예산편성 계획
	2019.10.3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20.2.27.)	자동차정비 분야의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추진	정비전문인력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필요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1년 10~11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타 그 밖의 사유

- 그 밖에도 행정부 내 사업 우선순위 고려 및 재원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된 사례
 -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원장, 2019.10.31.의결, 2020.6.4.시행) 개정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 실시 및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 응급장치 구비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

[표 36] 예산미반영 유형별 사유: 기타 그 밖의 사유

의결년도	의결일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2019년	2019.4.5.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19.10.24.)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내부 조직 및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국방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4항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
	2019.10.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4.)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에 대한 조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5년 주기로 되어있고 기금의 예산 여건 등이 고려되어 미반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에 설치 규정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강화되었으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금 여건, 우선순위 등이 고려하여 미반영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2021년 10~11월)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 현황: 위원회별

(1) 개요

-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재정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미반영 사례를 위원회별로 살펴봄
 - 법률 제·개정에 따라 차년도에 즉각 사업비가 반영되는 건은 의무지출과 일부 재량지출에 한정되며, 재량지출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시행일 미도래, 사업계획 수립 중 및 예산확정 후 법률안 개정 등

(2) 예산미반영 사유: 위원회별

(가) 법제사법위원회

- 2020년 가결된 법무부 소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판결서 열람범위 확대 사업비가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법무부는 법안 가결 시점에 이미 2021년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어, 2023년 시행일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 중

[표 37]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법무부	민사소송법 (위원장, 2023.1.1)	판결서 열람범위 확대	시행일 미도래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정무위원회

□ 2020년 가결된 국가보훈처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기존 사업비 내에서 처리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위탁병원진료(세부사업)사업 예산(2,350억원) 내에서 충당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연간 7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예상되며, 참전명예수당(세부사업) 예산(6,646억원) 내에서 충당 가능 할 것으로 예상

[표 38]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정무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3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대한 규제대상 기업 수가 증가	시행일 미도래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 2020. 3.24.)	참전유공자 대상 확대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2020.9.25.)	제대군인 진료비 감면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1.4.6.)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사업계획 수립 중 (공법단체 설립일 미정)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교육위원회

- 2020년 가결된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 등 8건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요인이 2021년에 예산에 미반영
- 대부분의 재정수반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되므로 시·도교육청의 사업비 편성은 확인 곤란

[표 39]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교육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교육부	유아교육법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020.3.1.)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교육비특별회계내에서 수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020.7.30.)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기존 대학법인 출연금 내에서 수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020.7.30.)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기존 대학법인 출연금 내에서 수행
	초·중등교육법 (위원장, 2020.9.25.)	안전한 통학여건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내에서 수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위원장, 2020.9.25.)	학교법인 청산 지원	향후 사업 추진 중
	학교급식법 (임재훈의원 대표발의, 2021.1.30.)	영양교사배치	교육비특별회계 내에서 수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3.25.)	학교복합시설 설치시 학생 안전보장 대책 마련	시행일 미도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2022.1.13.)	실태조사 실시 및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등	시행일 미도래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치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0년 가결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뇌연구촉진법」 등 2건 개정
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설치·운영, 뇌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보상체계 마련 관련 개정사항은 2021년 예산안 편성 후 법률안 개정

[표 40]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설치·운영	예산안 편성 후 법률안 개정(2020.5.20.)
	뇌연구촉진법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6.9.)	뇌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보상체계 마련	예산안 편성 후 법률안 개정(2020.11.19.)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치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외교통일위원회

- 2020년 가결된 통일부 소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3건 개정
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기존사업비 내에서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

[표 41]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외교통일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3.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규모 예측 곤란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정수 확대(18→25명)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7.6.)	창업지원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10.1.)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25→30명)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치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국방위원회

- 2020년 가결된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제정안은 주한미군소속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국방부는 2021년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시행계획이 없다는 의견

[표 42]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국방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국방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위원장, 2020.8.20.)	생계안정급여금 지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계획이 없음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치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행정안전위원회

- 2020년 가결된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4건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주로 법 통과와 예산안 편성 시점의 차이, 시행일 미도래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법 (위원장, 2022.1.13.)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신설	법률 시행일 미도래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지자체별로 수행되어 예산편성내역 파악 곤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21.1.1.)	통합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	법률이 2020.12.1.에 통과되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불가
경찰청	도로교통법 (위원장, 2021.7.13.)	도로공사 시행 시 안전요원 배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주체로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 곤란
	도로교통법 (위원장, 2020.11.2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동승보호자 추가	도로교통공단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0년 가결된 문화체육부 및 문화재청 소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주로 시행일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미반영

-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체육인 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인권침해 기기 설치 범위와 방법 및 주체 등에 관한 정부의 검토가 시작되지 않아 관련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음

[표 44]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12.10.)	장애예술인 지원	시행일 미도래
	점자법 (위원장, 2020.12.8.)	한글 점자의 날 제정	
	한국수화언어법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20.12.22.)	한글 수어의 날 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2021.6.23.)	만화진흥위원회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위원장, 2021.2.1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행일 미도래 및 설치 범위· 방법·주체 등에 대한 선행검토 필요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1.6.10.)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 지정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 기초조사연구용역 (30억)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예산편성 예정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0년 가결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13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사업계획이 없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

[표 45]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정부, 2020.11.26.)	경마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사업 준비 중
	농어촌정비법 (위원장, 2020.8.12.)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계획 없음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21.5.20.)	청년농업인 지원	기존 사업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해양 수산부	선박직원법 (위원장, 2020.5.19.)	해기사 실습 지원	사업 변경으로 지원 불필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0.9.11.)	잠수사를 보상범위에 포함	예비비 집행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2021.2.19.)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기존 사업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2021.7.26.)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원	사업계획 없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22.)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	
농촌 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위원장, 2020.5.12.)	활동 경비 지원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2.18.)	국유림 사용 확대	기존 사업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3.24.)	임업인의 날 제정	사업계획 없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021.6.23.)	정원산업 지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2021.2.10.)	도시 숲 조성 지원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치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0년 가결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주로 하위법령 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산업통상 자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병원의원 대표발의, 2020.8.5.)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시행자의 지원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시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가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0.9.24.)	실태조사	실태조사 예산반영 전 기획 준비 중
중소벤처 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1.2.5.)	빈 점포의 활용 촉진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위원장, 2021.6.9.)	우수근로자 지원,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시행일 미도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23.)	시장개척지원, 인력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하위법령 수립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6.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에 대한 지원 등	기획재정부 편성단계에서 예산 삭감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카) 보건복지위원회

- 2020년 가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등 5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21.12.29.시행) 개정은 2021년 시범사업 종료 후 예산 편성 예정
 - 「국민연금법」(2020.1.21.시행) 개정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던 미납부자에게 납부 재개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4.1.시행) 개정은 법령 정비 중
 - 「노인복지법」(2021.6.30.시행) 및 「국민연금법」(2021.6.30.시행) 개정 건은 기존사업비 내에서 사업 집행 예상

[표 47]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위원장, 2020.1.21.)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미납부자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 지원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중으로 조사 완료 후 사업시행 예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4.1.)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중
	노인복지법 (위원장, 2021.6.30.)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제공	기존사업 예산으로 추진 가능
	국민연금법 (위원장, 2021.6.30.)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 추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12.29.)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 유전자검사교육 비용 지원	2021년에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산 반영 예정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치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타) 환경노동위원회

□ 2020년에 가결된 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등 12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예산안 확정 이후 법률안이 가결된 사례가 대부분

[표 48] 2020년 가결 지출법을 예산미반영 현황: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고용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위원장, 2021.6.9.)	채당금의 범위 확대	예산안 제출 이후 법률 가결(2020.11.19.)
	근로복지기본법 (위원장, 2021.6.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원장, 2021.6.9.)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	
	고용보험법 (위원장, 2021.7.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7.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예산안 확정 이후 법률 가결(2020.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원장, 20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환경부	자연공원법 (위원장, 2020.12.10.)	국립공원의 날 지정 및 행사 등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수도법 (위원장, 2021.4.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	별도예산 편성 불필요 (필요시 향후 국고지원의 우선순위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10.)	자원순환보증금관리 위원회 운영	하위법령 개정 시 구체화할 예정
	환경보건법 (위원장, 2021.7.6.)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진료 지원 등	기존 사업예산으로 추진
	석면피해구제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1.7.6.)	요양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예산안 확정 이후 법률 가결(2020.12.9.)
	하수도법 (위원장, 2022.1.6.)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내역 파악 곤란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파) 국토교통위원회

- 2020년 가결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안전법」 등 17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시행일 미도래로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교통안전법」(이정미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어린이와 유아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업소관이라는 의견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 계획이 없음
 -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원대상 등을 확정하지 않았고 지원계획이 없다는 의견

[표 49]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국토 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0.4.7.)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 여객선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소관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영일의원 대표발의, 2020.9.8.)	공영차고지설치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반영 파악 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원장, 2020.10.8.)	수익성없는 노선운행 여객자동차 사업자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반영 파악 불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20.10.8.)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 위탁 운영비	시스템 구축이 완료(22년까지) 된 후 예산에 편성할 필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20.12.10.)	물류밀집지역 도로, 기반시설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반영 파악 불가
	항공사업법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20.12.10.)	초경량비행장치 보험가입	각 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비행기 등 보유 실태를 알 수 없어 예산편성 내역 파악곤란
	교통안전법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2021.1.1.)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없음
	공인중개사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3.9.)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반영 파악 불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021.4.6.)	예정지역 국제기구 임차 및 운영비 지원	국제기구 유치 중
	주차장법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2021.4.21.)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비용 보조	기존 사업 내 지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4.21.)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지원	지원대상 등 정부계획 없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2021.4.21.)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개량비용 지원	시행일(2021.4.21) 미도래로 2022년부터 수요조사 시행예정
	건축법 (위원장, 2021.6.9.)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반영 파악 불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021.6.9.)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실태조사	130만호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전체의 노후화, 복지시설 등 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일률적 으로 의무화시 관리주체의 과도한 부담 발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위원장, 2021.6.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설치대상예 연안항 추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예산반영 파악 불가
	도시철도법 (위원장, 2021.7.13.)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교체비용지원	시행일(2021.7.13.) 미도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22.1.6.)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시행일 미도래 및 정부안 편성 시 미반영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하) 여성가족위원회

- 2020년 가결된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 지원법」 등 3건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2021년 예산에 미반영
 - 주로 시행일 미도래로 사업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표 50]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미반영 현황: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부처	법률명 (제안자, 시행일)	재정수반요인	예산미반영 사유 ¹⁾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위원장, 2020.5.19.)	가족실태조사 주기 변경	사업시행시기 미도래
	아이돌봄 지원법 (위원장, 2020.11.20.)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원장, 2021.6.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실시	시행일 미도래

주: 1) 예산미반영사유는 소관부처 의견조회 결과로 보고서 발간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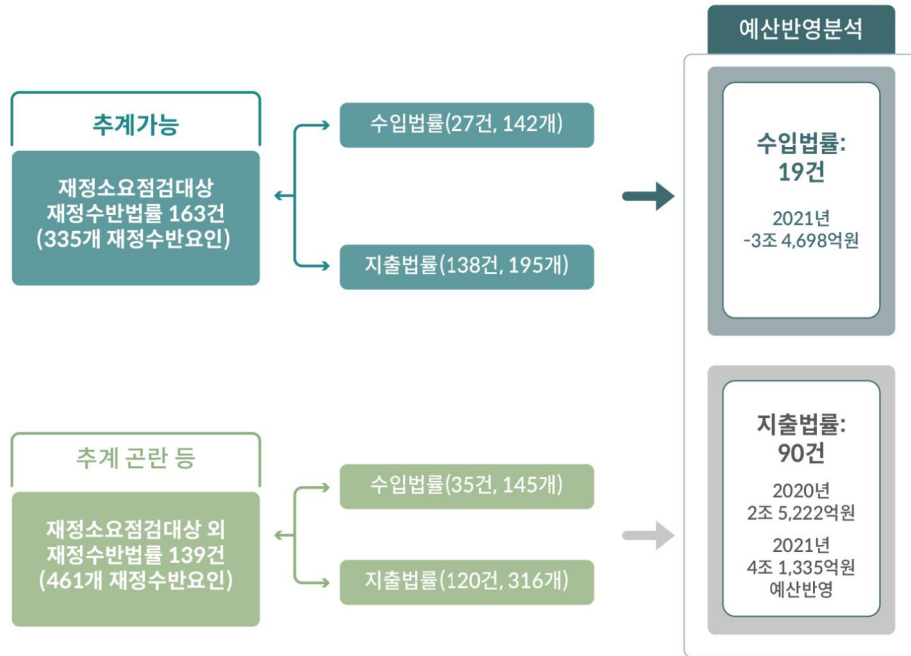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이 재정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한 결과, 재량지출 관련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무지출 관련 제·개정 건의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한 경우, 예비비 집행,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집행
 - 재량지출 관련 제·개정 건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재정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
- 재정수반법률⁴⁰⁾ 제·개정의 이유는 법률이 지향하는 공공 목적 달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제·개정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관련 사업이 적시에 계획되고 해당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40) 재정수반법률이란 해당 법률안을 통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예산 및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이 변동되어야 하는 법률안을 의미함. 하연섭 외, 「비용추계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2021. 2.

V. 결 론

- 2020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302건 중 추계가 가능한 163건의 335개 재정수반요인의 재정변동을 점검
 - (수입) 수입 관련 재정수반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27건(142개 요인)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150억원 수입 증가 예상
 - 국가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825억원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5년 동안 연평균 5,674억원 감소 예상
 - (지출) 지출 관련 재정수반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138건(195개 요인)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4,14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비는 연평균 5조 6,503억원 증가, 지방비는 연평균 7,642억원 증가 예상
 - 의무지출은 연평균 3조 3,544억원(국비 2조 7,338억원, 지방비 6,206억원) 증가 예상
 - 재량지출은 연평균 3조 600억원(국비 2조 9,165억원, 지방비 1,436억원) 증가 예상
 - 재정수반법률(302건) 중 139건의 법률은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하므로 재정소요점검에서 제외

[그림 5] 2020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및 예산반영 현황



- (수입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0년 가결된 수입 재정수반법률은 62건이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27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을 실시
- (특징) 2020년 가결된 수입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은 소비 및 투자 활성화, 서민·중소기업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등
 - (소비 및 투자활성화)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통합투자 세액공제 재설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등
 -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소득세법」), 법인·다주택자 중심의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강화(「종합부동산세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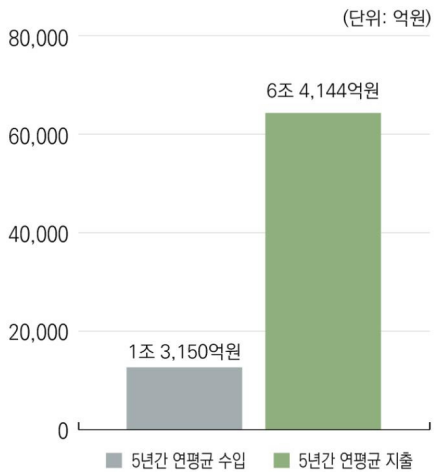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0년 가결된 수입 재정수반법률 27건(142개 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조 3,150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조세수입) 2020년 가결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 2,066억원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금수입) 2020년 가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494억원 기금수입 증가 예상
 - (세외수입) 2020년 가결된 「예금자보호법」 등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9,722억원 세외수입 증가 예상
- (수입 예산반영 현황) 2020년 가결된 법률 중 2021년 총수입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19건이며, 예산 반영 규모는 2021년 3조 4,698억원 감소
 - 국세수입 관련 18건의 세법개정으로 4조 7,198억원 감소
 - 국세외수입 관련 1건의 개정으로 1조 2,500억원 증가

□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0년 가결된 지출 재정수반법률은 258건이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38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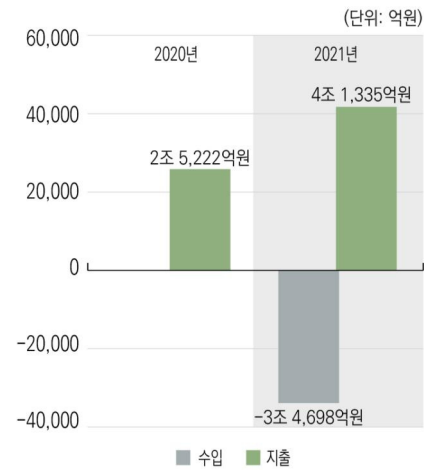
- (특징) 2020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보건의료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사회보험 대상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수소경제·탄소중립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사회기반 조성 및 안전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등
 - (코로나19 보건의료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액 긴급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사회보험 대상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사회안전망 강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 등(「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청년기본법」 제·개정)

- (수소경제·탄소중립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사회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 유통지원 등(「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 (안전환경조성 및 인권보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0년 가결된 수입 재정수반법률 138건(195개 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4,14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의무지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법」 개정 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3,544억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증가 예상
 - (재량지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600억원 국가 지출 증가 예상
- (지출 예산반영 현황) 2020년 가결된 법률 중 2020년과 2021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90건이며, 예산 반영 규모는 2020년 2조 5,222억원, 2021년 4조 1,335억원으로 집계됨
 - 2020년 예산반영액은 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손실보상 긴급 지원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한 사업비가 예비비로 집행된 바 있음

[그림 6]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결과: 수입·지출



[그림 7] 2020년 가결 법률에 따른 예산
반영 현황



□ 2020년 가결된 법률이 2020년과 2021년도 예산에 미친 영향을 중앙 정부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0년 총지출⁴¹⁾은 전년 대비 79조 3,36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3.2%인 2조 5,222억원이 2020년 제·개정된 법률의 효과
- 2021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0조 1,801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8.2%인 4조 1,335억원이 2020년 제·개정된 법률의 효과

[표 51] 2020년 가결 지출법률 예산반영 현황: 2020~2021년

(단위: 억원, %)

	2020년	2021년
예산반영액(a)	25,222	41,335
총지출 전년대비 증액(A)	793,361	501,801
비중(a/A)	3.2	8.2

주: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1) 연도별 총지출(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의미)이며, 추가경정예산 기준

□ (예산미반영분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결된 지출법률에 대한 예산미반영 사례를 점검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모두 재량지출 관련 법률에서 미반영 사례가 나타남
 - 미반영된 주된 이유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 미반영’, ‘제·개정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사업계획 미수립’ 등으로 나타남
-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재정수반법률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비 투입이 전제되므로,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적시에 계획되고 사업비가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매년 가결 법률의 예산미반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률과 예산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부록] 2020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부록]에서는 2020년에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추가재정소요가 연평균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요 법률을 제시

〈수입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8,203	-41,014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8,173	-40,86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기한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4,267	-21,334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3,570	-17,850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06287	지방세법	-2,702	-13,512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2105953	부가가치세법	-2,245	-11,225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388	-6,93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312	-6,558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259	-6,296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747	-3,737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년)		
2024814	조세특례제한법	-690	-3,44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4814	조세특례제한법	-680	-3,400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596	-2,980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24814	조세특례제한법	-586	-2,929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2106287	지방세법	-560	-2,800
	법인지방소득세 과표 계산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적용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525	-2,627
	협동화 실천계획에 따른 직접사용 및 분양·임대용 목적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502	-2,51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2103325	증권거래세법	-469	-2,343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450	-2,25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경감 신설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447	-2,237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397	-1,987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30만원 상향		
2024814	조세특례제한법	-377	-1,88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한도 상향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105953	부가가치세법	-373	-1,866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2024494	지방세특례제한법	-367	-1,83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특례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364	-1,820
	중소기업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288	-1,440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4494	지방세특례제한법	-235	-1,176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12	-1,062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11	-1,056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90	-95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24494	지방세특례제한법	-177	-886
	도시철도공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72	-860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024494	지방세특례제한법	-163	-814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2024769	인지세법	-158	-791
	기간통신역무 가입신청서 및 3~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024895	조세특례제한법	-156	-781
	4~7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33	-663
	5G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시 등록면허세 감면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30	-652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신설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24	-61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일몰기한 2년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23	-617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105950	법인세법	-119	-59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14	-57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11	-557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09	-543
	중소기업·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용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05	-524
	신기술창업직접지역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02	-512
	연안 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90	-448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제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89	-447
	녹색건축인증건물 취득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3년)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024814	조세특례제한법	-87	-437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특례 확대		
2024494	지방세특례제한법	-78	-391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2106287	지방세법	-69	-345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사업소세 전환에 따른 과세구간 간소화 및 세율 인하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66	-330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64	-318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48	-238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용 부동산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47	-234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46	-232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05953	부가가치세법	-43	-217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2024895	조세특례제한법	-35	-174
	4~7월 선결제 금액에 대해 1%의 세액공제 신설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33	-16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2024494	지방세특례제한법	-33	-163
	문화예술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2년 연장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9	-146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8	-140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양도소득세 추가 건당 2만원)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25	-123
	임업후계자의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1	-10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2105948	관세법	-20	-100
	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 품목분류 변경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8	-92
	외국인 관광객 숙박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일몰연장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5	-7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05944	소득세법	-15	-75
	가산세율 0.5%에서 0.25%로 인하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3	-66
	한국자산관리공사 취득 경영위기중소기업 보유 자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2	-61
	농협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 산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2106289	지방세특례제한법	-12	-59
	임업후계자가 교환 및 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2년말까지로 제한		
2104803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10	-50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세 비과세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10	-5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2103451	예금자보호법	19,700	98,50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용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추가		
2101804	종합부동산세법	13,195	65,975
	주택분 세율 인상 등		
2105944	소득세법	9,645	48,227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105944	소득세법	5,515	27,575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21062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708	18,539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586	12,9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1062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61	8,3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제한		
2106287	지방세법	965	4,823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2105946	종합부동산세법	516	2,582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변경		
2105944	소득세법	370	1,848
	기타 금융투자소득(펀드, ETF) 과세체계 도입		
2024895	조세특례제한법	251	1,254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환급 특례 신설		
2105949	조세특례제한법	228	1,140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2021~2025)	
		연평균	합계
2103333	개별소비세법	170	84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		
20249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5	47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105947	국세징수법	36	180
	2차 공매통지부터 발신주의 채택		
21059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15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강화		
21054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153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		
21033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3	11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및 과세태료 규정 이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024484	기초연금법	26,889	134,443
	기초연금액 인상		
202494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1,304	56,522
	구직촉진수당 등 신설		
20249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8,722	43,610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 지원		
2106280	고용보험법	2,993	14,967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21062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05	8,5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4482	국민연금법	1,558	7,790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1686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432	7,16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2106258	지방자치법	903	4,517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2104171	한부모가족지원법	713	3,567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및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21686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516	2,58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2024483	장애인연금법	435	2,176
	장애인연금액 인상		
202442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426	2,131
	수산직접지불제 개편		
200869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418	2,09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024482	국민연금법	366	1,828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미납부자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 지원		
2106252	환경보건법	328	1,642
	환경성 질환에 대한 어린이 진료 지원 등		
2024720	수도법	238	1,192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20136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15	1,074
	공영차고지설치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원		
2106280	고용보험법	211	1,05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201990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	1,000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2105922	병역법	192	959
	단체보험 가입		
201107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9	846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201779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9	846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운영		
202442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54	772
	어업인 등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46	73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46	731
	창원가정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설치		
2104171	한부모가족지원법	133	665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24943	고용보험법	129	647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10606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감소분 지원	114	571
20247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인증기관 지원	111	556
2103920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에 임원, 의료 요원 및 직원 인력 배치	109	547
210625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항공정비실 설치·운영	108	541
2105484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103	513
210304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94	472
202400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89	446
2024694	전기안전관리법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88	441
210042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	88	440
2024952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 신설	87	433
202400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85	423
2106248	하수도법 강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측정·기록 등	84	418
2024921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83	416
2105922	병역법 입영판정검사제도 도입	82	412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01107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정부 데이터 분석활용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확대	82	411
20249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안전 관련 보험료 등 지원	72	359
202400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	67	333
202472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관련 사업 수행	60	300
2024636	의료법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58	289
2024420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56	278
2024063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55	277
202472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 등 추진	54	270
2105941	섬 발전 촉진법 한국섬진흥원 설립	51	257
2024950	항공보안법 스마트공항구축	50	248
200376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46	228
2024737	사립학교법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 법정화	44	222
210629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40	201
201827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38	190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104378	지역문화진흥법	37	186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1054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176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		
200390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3	163
	석재산업의 기반조성 지원		
2023987	청년기본법	31	157
	청년고용촉진 및 청년 창업지원 등 지원		
202472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31	157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2021537	교통안전법	31	156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		
20198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	15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2023994	자연재해대책법	30	150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200390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0	149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지원		
2024694	전기안전관리법	30	149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2024737	사립학교법	29	145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 등		
21060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7	137
	유전자검사교육 비용 지원		
202398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6	130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피고인)		
202399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6	130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등		
2024483	장애인연금법	25	127
	장애인연금액 적용기간 변경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1062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5	127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		
210425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5	12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202184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118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2106078	국민연금법	22	111
	사망일시금 지급		
20247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1	107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202498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10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		
20240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10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210549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1	103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2105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	10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운영 4년 연장		
202469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	10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위원회 운영		
210593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9	96
	중앙 및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운영		
210416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	9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등		
201923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	88
	부정행위 조사 등		
202398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7	87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보호관찰자)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연평균 (2021~2025)	합계 (2021~2025)
20175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	86
	국가관리묘역 지정		
202067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	80
	주민지원대책으로 농지 토지매수		
2024055	선박직원법	16	80
	해기사 실습 경비 지원		
21020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5	73
	공법단체 지원		
20056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4	68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20247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3	66
	노유자시설 전기료 지원		
2023996	환자안전법	13	63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202471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2	59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운영비 등		
210418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	56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201107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	55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00376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10	50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		
200333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0	50
	유네스코 유산 남북 공동등재 등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		
202402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0	50
	접경지역 포함		
2024915	도로교통법	10	50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1년 12월 24일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유월애

. (tel 02·6788·3766)

ISBN 979 - 11 - 6799 - 036 - 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0-001634-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